

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. 2. 23

제안자 : 조영재 의원의외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2조제2항,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의 조문을 명료화하기

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한 조례안

제12조제2항,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중“과반수의 출석과”를

“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수정함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2항,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중“과반수의 출석과”를

“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전부 개정안	수 정 안
<p>제12조(회의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<u>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2조(회의운영) ①(전부 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<u>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</u>하고</p> <p>.....</p>
<p>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<u>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4조(분과위원회) ①~③(전부 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</u>하고 ..</p> <p>.....</p>
<p>제15조(공동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<u>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5조(공동위원회) ①~③(전부 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</u>하고 ..</p> <p>.....</p>